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연월일 : 2015.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나아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운영 내용 개정 및 신설(안 제4조~안 제4조의3)

나. 상위 법령 조항 개정 사항 반영(안 제17조, 안 제22조)

다.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 규정 신설(안 제32조)

라. 사용료·대부료 감액조정 대상 범위 확대(안 제34조)

## 3.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 제21조, 제27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16조, 제34조

3) 「관광진흥법」 제76조

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붙임)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본청 4급 공무원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 추천 등에 있어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금융계, 기업계, 기관·단체등에 소속된 사람

4. 공인중개사, 건축사 또는 도시계획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계과장으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회의 등) ① 심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에 제출 할 안건은 회의 개최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중 총괄재산관리 담당국장, 민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심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에 자료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심의회는 위원과 심의회에 출석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임기 중 스스로 사임하고자 할 때

3.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

4.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설한 때

5.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제2항제1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7조 중 “영 제17조”를 “법 제21조”로 하고, 제22조제4항 중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가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 할 수 있다.

제34조 중 “10이상”을 “5이상”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따른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최초 구성이후 제출되는 안건의 심의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법<br>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br>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br>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br>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br>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br>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br>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br>미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br>의회"라 한다)를 둔다.                                                                                         |
| <신 설>                                                                                             |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br>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br>명 이하로 구성한다.                                                                                                                                                      |
| <신 설>                                                                                             |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br>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 담당 국<br>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br>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br>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
| <신 설>                                                                                             | ④ 당연직 위원은 본청 4급 공<br>무원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다<br>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br>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br>여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하되 위<br>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br>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br>만, 위원의 자격, 추천 등에 있<br>어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br>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 |

<신 설>

다. 또한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  
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  
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  
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  
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재  
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  
획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금융계, 기업계, 기관·단체등  
에 소속된 사람

4. 공인중개사, 건축사 또는 도  
시계획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  
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회의 임기

<신 설>

<신 설>

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계과장으로 한다.

제4조의2(회의 등) ① 심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에 제출 할 안건은 회의 개최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중 총괄재산관리 담당 국장, 민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 설>

⑦ 심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에 자료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심의회는 위원과 심의회에 출석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생략)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 4. (생략)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연도 예산을 시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임기 중 스스로 사임하고자 할 때

3.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

4.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설한 때

5.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  
- 제7조제3항 -----  
-----

2. ~ 4.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삭제>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시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의 의결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 ③ (생략)

④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

①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7조(무상사용기간) -----  
----- 법  
제21조 -----  
-----  
-----  
-----  
-----  
-----.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7조제6항 -----  
-----  
-----  
-----  
-----  
-----  
-----.

⑤ -----  
----- 법  
제27조제6항 -----  
-----  
-----

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  
분할 수 있다.

⑥ (생략)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  
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의 규  
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  
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  
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  
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  
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  
을 경영하려는 사업(「부품  
·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  
산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및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거나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  
면) ①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가. -----  
-----  
-----  
-----  
-----  
-----  
-----  
-----  
-----

|                                                                                                                                                 |                                                                                                                                                                                                                                                                                                   |
|-------------------------------------------------------------------------------------------------------------------------------------------------|---------------------------------------------------------------------------------------------------------------------------------------------------------------------------------------------------------------------------------------------------------------------------------------------------|
| <p>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u>지식경제부장관</u>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p> <p>나. ~ 바. (생략)</p> <p>3. (생략)</p> <p>② (생략)</p> <p>&lt;신설&gt;</p>              | <p>-----</p> <p><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p> <p>-----</p> <p>-----</p>                                                                                                                                                                                                                              |
| <p>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p> | <p>나. ~ 바.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p> <p>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p> <p>-----</p> <p>-----</p> <p>-----</p> <p>----- 5이</p> <p>상 -----</p> <p>-----</p> <p>-----.</p> |

## 관 계 법 령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2015.1.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1.20.>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

[전문개정 2008.12.26.]

[제목개정 2015.1.20.]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0.>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20.>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전문개정 2008.12.26.]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1.7., 2015.1.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2.4.,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4.1.7., 2015.1.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2.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

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

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4.7.7.]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0.]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7.>

[전문개정 2009.4.24.]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7.>

[전문개정 2009.4.24.]

## □ 「관광진흥법」

**제76조(제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1.4.5.>

##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유 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6.]

| 소관 실·과      |       | 회 계 과               |
|-------------|-------|---------------------|
| 입<br>안<br>자 | 과 장   | 배 재 영               |
|             | 담 당   | 정 연 원               |
|             | 담 당 자 | 정 혜 진<br>(480-5072) |